

---

#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

한 모 니 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

## 머리말

- I. 정전 이후~1960년대 전반,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조항과 공동감시소조의 無力化
  1.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조항과 균열
  2.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의 무력화와 감시초소(GP)
- II. 1960년대 후반, 남북의 비무장지대 충돌과 유엔군사령부
  1. 북한의 공세와 남한의 베트남파병에 대한 미국의 인식
  2. 미국의 정전협정 '준수'와 유엔군사령부 존속
- III. 비무장지대의 對침투 체계 구축과 무장화
  1. 한·미의 비무장지대 대침투 체계 구축 논의
  2. 철책 설치와 초목 통제

## 맺음말

---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0-361-A00017).
- 투고일: 2019. 8. 21.    ● 심사일: 2019. 8. 22.    ● 게재확정일: 2019. 9. 2.
- <https://doi.org/10.31218/TRKH.2019.09.135.163>

## 요약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의 경계로서 정전협정을 토대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군사충돌이라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응축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정전협정 위반과 정전체제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을까. 또한, 비무장지대는 약 250km 길이, 4km 폭의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정전 직후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온 공간이다. 비무장지대의 변화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1960년대까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무장지대 모습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정전체제의 유지 원리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음을 주장한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전반기 공동감시소조의無力化와 감시초소(GP) 강화를 거쳐, 후반기 철책선 설치,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등의 對침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침투 체계 구축은 단순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영향으로 계획되었음을 살펴본다. 즉 남북관계, 한미관계, 국제정세 등과 맞물려 비무장지대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살피고,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정전체제와 그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논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정전협정, 비무장지대(DMZ),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베트남전쟁, 유엔군사령부, 철책, 초목 통제, 감시초소

## 머리말

남북한의 분단 경계는 하나의 경계선이 아닌 중첩된 경계선들과 완충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정전협정은 남북의 경계선으로 군사분계선을 획정하면서, 동시에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씩 후퇴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남·북방한계선 사이의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로서, 적대 행위가 초래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지대로 규정되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의 경계로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는 정전 직후부터 무장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남북의 군사력이 응집된 공간이 되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구체적인 무장 정도에 대해서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왔지만,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급기야 2014년에는 비무장지대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가 다종의 중화기 배치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유엔사 규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sup>2)</sup>는 양측이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와 적대 행위가 심각함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이 공간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본래의 비무장지대로 돌려야 한다거나, 세계냉전박물관 또는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비무

- 
- 1) 2014년 9월 5일자로 개정된 <유엔사규정 551-4>는 개인화기를 비롯한 다종의 중화기를 비무장지대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했는데, 유엔사는 그 명분을 북한의 중화기 배치에 따른 현실적 대응조치로 설명했다[<北 비무장지대 중화기 반입에 유엔사도 2년전부터 맞대응> 《연합뉴스》 2016. 7. 10. <https://www.yna.co.kr/view/AKR20160707151300014>].
  - 2)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의 적대 행위 중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 역사문화유산의 공동조사 등),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강구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장지대의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모두 세심하게 검토할만한 의견들이다.

그런데 정작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언제,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다. 1960년대 전반 북한이 먼저 광범한 요새를 구축했다거나, 남측의 진지구축은 1968년 1·21사태 이후 이루어졌다는 등이 언급되는 정도이다.<sup>3)</sup> 즉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군·유엔군이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연성이 있으나, 당시 유엔사와 북한이 벌였던 공방을 재연하고 그중에서도 어느 일방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갖는 함의와 군사충돌의 원인 및 양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오늘날의 형태와 같이 본격화된 시기를 1960년대 후반으로 보며,<sup>4)</sup> 이때 비무장지대의 변화가 한반도 내의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베트남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sup>5)</sup> 이 글은 국내외 냉전 상황의 여파가 직접 가해진 한반도 내 공간

---

3) 이문항은 북한이 1963~1965년까지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측 초소들을 연결시키는 광범위한 요새 진지를 구축하였고, 지하굴로 연결, 식목으로 위장하였다고 서술했고(이문항, 2001 《JSA-관문점(1953~1994)》, 소화, 107쪽), 조성훈은 1959년 여름 북한이 초소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여 1965년 대부분 초소가 요새로 바뀌었으며, 남측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1968년 1·21사태 이후 미군이 진지구축을 통해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조성훈, 2011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군사편찬연구소, 228쪽). 정근식은 냉전 경관의 측면에서 철책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주목하고 규명하고자 했지만, 역시 1·21사태 이후 철책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정근식, 2018 <분단·냉전 경관과 평화> 《황해문화》 100, 165~169쪽).

4)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지속적으로 정전 관리기구의 주요 감시·조사기능이 무력화되어 1960년대 전반에 전방초소의 요새화가 이루어지고, 후반에 대침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화의 기본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5)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용호, 2004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이 바로 비무장지대였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 비무장지대 변화의 핵심 원인과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목표로 했던 것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처럼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논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와 극복의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軍 관련 자료,<sup>6)</sup> 미 국무부·주한미대 사관·국방부·유엔군사령부 등이 교신한 문서 등을 분석하겠다. 본 글과 관련된 미국 자료로 1960년대 후반 한미 정치·군사 관계를 담은 국무부 문서와 주한미군 문서, 그리고 《미국의 외교 관계 문서집》(*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등을 검토했다. *FRUS*는 미국의 비무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오홍국, 2011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국방현대화 과정 분석> 《군사논단》 67호; 박태균, 2015 《베트남전쟁》, 한겨레출판 등의 연구가 있는데, 특히 국방부 견해는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이 한국군 현대화의 기초를 다졌고, 브라운각서가 그 기반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한편, 1960년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정전체제에 대해서는 홍석률, 2001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 관계> 《한국사연구》 113; 홍석률, 2003 <위기 속의 정전협정-푸에블로 사건과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역사비평》 63; 한모니까, 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50; 김보영, 2003 <1960년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체제’> 《역사와 현실》 50; 홍석률, 2012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있으나, 지면상 생략한다.

- 6) 한국군 자료로는 국방정보본부, 198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한국국방연구원, 1991 《韓美安保關聯協定 要略集: 1948~1989. 9》 등을 참고했다. 그런데 《군사정전위원회편람》과 《韓美安保關聯協定 要略集: 1948~1989. 9》은 한국군이 생산한 정책자료가 아니라 정전협정 및 한미안보관련 협정 문서들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현재로서는 한국군이 생산한 정책자료에 대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대신 국방부의 정책이 발표되거나 비무장지대 상황을 묘사한 국내 언론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를 검색하여 분석했다.

장지대 및 한국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타 국무부와 주한미군이 기록한 한미 정치·군사 관련 문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sup>7)</sup>

## I. 정전 이후~1960년대 전반,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조항과 공동감시소조의 無力化

### 1.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조항과 균열

정전협정은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을 두고, 제10항에서 비무장지대 내 책임, 출입자, 휴대 무기 등을 규정했다. 책임 면에서는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부분의 민사행정 등은 유엔군사령관이, 이북 부분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맡는다고 되어있다.<sup>8)</sup> 이들 세 주체는 정전협정 서명의 당사자인 동시에 비무장지대 책임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

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68*, volume XXIX, Kore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이하 *FRUS 1964-68 KOREA*). 이 외에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미국에서 수집한 국무부문서 RG 59, 1967-69 SNF,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POL 23-7 KOR S 6/1/67와 RG 550,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74, Box 100,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등을 활용했다. 부분적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1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명턴위원회 청문록》을 활용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1960년대 후반 군사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8)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국방정보본부, 앞의 책, 32쪽

남쪽 비무장지대에 관한 책임을 유엔군사령관이 지금까지 맡고 있으며, 그 책임과 권한은 <유엔사규정 551-4>(1986. 4. 25)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되었다.<sup>9)</sup> 따라서 유엔군사령부, 사실상의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비무장지대 인식과 정책이 비무장지대의 변화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가 비무장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출입자, 인원, 휴대 무기, 출입의 목적 등에 제한을 두었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허가된 군인 또는 민간인 1천 명 미만이 출입 가능하며,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한다고 했다.<sup>10)</sup> 이는 사실상 군인이 전투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며, 출입자의 성격도 민사행정 경찰에 국한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는 추가 합의를 진행했는데, 정전협정 체결 3일 뒤인 7월 30일 사실상 군인의 출입

9) <유엔사규정 551-4>(1986. 4. 25)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이 규정은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한 현 정전기간 중에 적용”되며,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계되는 한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명시했고(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409쪽), 비무장지대 “방책 및 철책 그리고 요새진지들과 유행 철조망의 보수 및 축조 등 정전협정과 관련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건설 활동은 하나하나 유엔군사령관의 특정한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명시하여(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422쪽), 각종 시설물들의 건설 및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 규정은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엔군사령관이 이미 행사하던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1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32~33쪽

을 허가하는 합의를 했다. 군사정전위원회 제3차 회의의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 경찰을 민사 경찰로 사용하는 데 관한 합의>가 그것이다.<sup>11)</sup> 이로써 군인들이 ‘민사 경찰’이라는 식별 가능한 제복이나 휘장만 착용한 채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군인들은 ‘민사 경찰’이라는 완장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에 사실상 군인이 들어갈 수 있게는 했지만, 비무장지대에서 활동하는 민사 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었다. 민사 경찰은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마다 총탄 1발 이상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보총과 권총만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이때는 분명히 기관총과 자동소총 등의 자동식 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sup>12)</sup> 하지만 비무장지대에는 자동식 무기를 포함하여<sup>13)</sup> 중화기의 반입이 이루어졌다.

정전협정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이 공간을 비무장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었다. 사실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이곳은 바로 1951년 여름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약 2년간 전선이 교착되었던 곳으로서, 남북 양측의 진지가 구축되고 화력이 집중 배치되었던 곳이었다. 때문에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에서 ①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

---

11) 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141쪽

12) <민사 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1953. 7. 31 군사정전위원회 제4차 회의 합의) 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141쪽

13) 2017년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원래 정전협정상 M-16과 AK 소총 등의 반입은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북이 모두 반입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K 소총의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오래전에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도 문제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M-16과 AK 소총은 연발 자동발사 기능이 있는 총이다. <JSA 귀순’ 대응 사격 안 한 우리 군 조치 과연 문제일까> 《한겨레》 2017. 11. 15.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9196.html#csidxff7efdafa05753d926b56e2438d542a>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고 ②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위험물은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고, ③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와 감독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제거한다고 규정했다(제13항 (ㄱ)). 즉, 한국전쟁 중 축적되었던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초소 및 진지, 군사 장비 등은 총 48일 동안에 철거되어야 했다. 이 규정은 새로운 무기류의 반입 금지만이 아니라 기존 군사 시설 및 장비의 제거가 비무장의 첫 단계라는 점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은 부대만이 아니라 무기, 탄약, 장비 등의 철수를 진행했고, 1953년 7월 29일 밤 10시까지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가 완료됐다고 선언되었다.<sup>14)</sup> 그리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의 감독하에 48일 내에 3만 톤 이상의 야전선 및 사용 가능한 건축 자재가 회수되었다.<sup>15)</sup> 이는 전쟁 중에 구축되었던 각종 진지가 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 상태에서 시작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전쟁 중에 뿌려졌던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했고, 이는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는 사람들과 침입하려는 사람들 모두를 괴롭혔다.<sup>16)</sup> 순찰하던 민정 경찰이 지뢰를 밟아 사망하거나<sup>17)</sup> 철조망을 끊고 월남하던 사람이 지뢰에 걸려 사망할 뻔했고,<sup>18)</sup>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뢰가 폭발하기도 했다.<sup>19)</sup> 그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이용되었던 초소나 진지 등의 군사 시설

14) <兩軍撤收完了 緩衝地帶 廿九日夜> 《동아일보》 1953. 8. 1; <中立地帶 兩軍撤收完了> 《경향신문》 1953. 8. 1

15)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16) 위와 같음.

17) <두명이 爆死 非武裝地帶서> 《경향신문》 1961.10.14

18) <家族迫害에 憤激> 《동아일보》 1957.10.20

19) <유엔 軍巡察隊에 北傀軍 機銃射擊> 《동아일보》 1963. 3. 29

도 남아 있었다. 양측은 2km씩 물러났지만, 전쟁 중에 구축했던 각종 군사 시설을 정전 직후부터 재사용하거나 전진 배치했다. 비워졌던 군사 시설은 다시 무기류로 채워졌고 시설물은 보강되어갔다.<sup>20)</sup> 이런 면에서 1950년대 진지구축은 전쟁의 연속선 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위반을 포함해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을 조사·수습할 수 있는, 즉 정전 관리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MAC)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sup>21)</sup> 등이 조직되었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중립국시찰소조가,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는 공동감시소조(JOT)가 설치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에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어떤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협의해서 처리할 권한이 부여돼 있었으나, 1963년 7월까지 정전협정 체결 10년간 총 176차나 거듭된 본회의에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본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공동감시소조는 비무장지대 위반사건을 조사하는 기구였다. 공동감시소조는 원래 10개 소조로 규정되었고, 1개 소조는 쌍방에서 나온 2~3명씩의 영관장교로 구성되었다.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서의 위반사건 공동조사, 비무장지대의 작업 감독, 군사분계선 표식 감독, 시체 발굴 및 교환 업무, 억류 인원

---

20) 2018년 겨울 남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를 총 22곳 시범 폐지하고 이 가운데 각각 1개씩 보존 지뢰로 선정했는데, 당시 남측이 남긴 고성829지뢰가 그것이다. 이 지뢰가 선정된 이유가 바로 ‘1953년 7월 전군 최초로 임무를 개시’한 즉 정전 직후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지뢰라는 것이었다. 이는 정전협정 체결과 거의 동시에 829지뢰가 설치, 운영되었음을 반영한다. 비무장지대에는 무력을 배치할 수 없지만 유엔사와 북한은 소규모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인 지뢰를 설치하고 침투에 대비한 무기도 갖추어 북측 지뢰와 남측 지뢰 간에는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해왔다.

21)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유엔군사령부 측이 지명한 중립국(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공산 측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중립국이란 말은 그 전투 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가리킨다.

의 교환 업무 등으로 규정되었다.<sup>22)</sup>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1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공동감시소조는 거의 정전 직후부터 조직 및 기능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1953년 12월 30일 양측은 주간 보고서 제출 폐지를 비준했고, 이어 10개 소조의 축소 방안이 논의되었다. 1954년 1월 10일 제35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이 10개 소조를 7개로 줄일 것을 제의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조·중은 동의했다가 6개 소조 축소안을 제의했다. 이에 유엔군이 동의하여 6개 소조로 축소 통합하는 수정 총칙이 비준되었다(1954. 3. 19). 하지만 다시 유엔군은 6개 소조에서 4개 소조로 축소할 것을 제의했고, 이에 조·중이 5개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마침내 양측은 6개를 5개 소조로 축소하는 데 합의하고, 비준했는데, 이때가 1955년 7월 18일이었다.<sup>23)</sup> 즉 공동감시소조는 비무장지대 위반사건이나 처리사항이 발생했을 때 군사분계선에 구애받지 않고 비무장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여 조사·활동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였다. 하지만 공동감시소조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22) 국방정보본부, 앞의 책, 157쪽. 정전협정 제2조 제26항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 제27항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40쪽)

23) 국방정보본부, 위의 책, 103~106쪽.

## 2.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의 무력화와 감시초소(GP)

정전 직후부터 유엔군 측과 북한 측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상대의 비무장지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된 위반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건수는 ‘완장 미착용’에 대한 것이었다.<sup>24)</sup> 완장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군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군인들은 민사경찰이라는 완장을 착용하지 않고, 계급장만 가리고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곤 했다. 가장 지키기 쉬운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화기 반입과 총격 사건, 진지구축 등의 협정 위반은 당연한 결과였다.

정전이 발표된 직후에도 비무장지대에서는 기관총탄이 날아다녔고,<sup>25)</sup> 1954년에는 정전협정에 의해 통행이 허가된 한강하구에서 유엔사의 선박이 북측으로부터 공격받는 일도 발생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자동화기 반입이나 요새진지 구축에 대한 상호 비난이 대폭 증가했다.<sup>26)</sup> 양측의 상호 비난과 그에 대한 부인 하나하나를 사실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비무장지대 내 중/자동화기 반입과 요새진지 구축의 진행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정전 이후 1960년대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된 정전협정 위반 건수를 보면,<sup>27)</sup> 이 시기, 북한은 유엔사의 중/자동화기 반입을 주로 비난했고, 유

---

24) 이문항이 정리한 <북한측의 연도별 유엔사(한/미) 정전협정 위반 비난 건수>와 <유엔사(한/미)의 연도별 북한측 정전협정 위반 비난 건수>를 보면, 북한이 유엔사측의 완장 착용 위반을 항의한 건수는 1953~1969년 평균 3,286건, 1960~1969년 평균 5,579건이었다. 유엔사가 북한군의 완장 불착용을 항의한 건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편이다. 이문항, 앞의 책, 367~371쪽 참조.

25) <29日 休戰文書 交換> 《동아일보》 1953. 7. 31

26) 이문항, 앞의 책, 367~371쪽 참조.

27) 위와 같음.

엔사는 북한의 요새진지 구축을 주로 항의했다. 이는 화력 면에서 앞선 유엔사와 요새진지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동향을 반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측 비무장지대에서도 감시초소((Guard Posts. GP)의 요새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피는 애초에 방어를 위한 감시초소(경계초소)가 아닌 관측을 위해 설치되었던 전초(outposts)였다. 그런데 점차 일부 전초가 군사분계선에 더 가깝게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진 배치된 전초가 전진 관측 초소(Advanced Observation Posts. AOPs)로 분류되고, 초소에 주둔한 군인들이 경계근무하는 건물이 되었다.<sup>28)</sup> 이 과정에서 요새화가 진행되었다.

감시초소의 요새화는 1960년대 전반에 그 원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965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홍성원의 자전적 소설 <<‘디.데이’의 兵村>>은 요새화되고 성곽의 형상을 한 지피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북한의 지피가 한옥과 같았다면, 남측의 지피는 양옥과 같았을 뿐 아니라<sup>29)</sup> 병커에 있는 호는 “철근까지 넣어 시멘트로 구축되어 마치 작은 성곽”과 같은 모양이었다.<sup>30)</sup>

모래부대로 쌓아올린 병커가, GP 양옥집 주위를 성곽처럼 둘러쌌다. (컴컴한 병커 속에서는) 비릿한 향토 흙냄새가 코에 향긋했다. 병커 안은 모래 부대 대신 시멘트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었다. 無蓋壕 위에는 LMG와 켈리버 50이 실탄을 문 채 거치되었고, 그 앞에 걸터앉은 사수와 탄약수는 충혈된 붉은 눈으로 꺾벽거렸다.<sup>31)</sup>

28) 전초가 위치와 기능에 따라 분화하면서, 비무장지대 남쪽 경계, 즉 남방한계선상에 있는 전초는 관측초소(Observations Posts. OPs)로 불렸다.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29) 홍성원, <‘디.데이’의 兵村> 《동아일보》 1965. 7. 7

30) 홍성원, <‘디.데이’의 兵村> 《동아일보》 1965. 12. 7

31) 홍성원, <‘디.데이’의 兵村> 《동아일보》 1965. 7. 8

비록 소설 상의 묘사이기는 하지만, 1961~1964년 강원도 철원 전방부대에서 군 복무한 작가의 경험을 볼 때 마냥 허구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1961년 겨울 시설물이 증축되었던 고성829지피 경우에 비출 때도, 1960년대 전반에 기본적으로 지피의 요새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계속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68년에 이르면 전방초소 등의 진지는 모두 지하요새화되고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영구요새화된 벙커들은 포사격 시험결과 “수백발의 포탄을 맞고도 끄떡도 앓”을 정도가 되었다.<sup>32)</sup> 이렇듯 요새화된 지피는 1·21사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960년대 전반에 만들어졌다.<sup>33)</sup> 그 수도 1967년 현재, 유엔사 측에는 89개, 북측에는 109개에 이르고 있었다.<sup>34)</sup>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진지구축과 요새화를 둘러싸고 북한과 유엔사는 상대를 비난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양측 모두 지피를 확대 강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무장지대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측은 정전협정이 규정했던 바와 같이, 공동감시소조를 활용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문항의 조사에 의하면, 1953~1965년 사이 유엔군측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무장간첩사건, 요새진지 구축, 경비병들의 분계선 월경과 총격사건 조사를 위해 총 17회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측은 1957~1963년 사이 남한의 무장간첩 사건 조사와 월경사건 조사 및 송환을 위해 총 37회 회의를 소집했다.<sup>35)</sup>

---

32) <철통防備> 《동아일보》 1968. 6. 25

33) 다만 1·21사태 이후 준공된 지피도 있듯이, 준공이나 증축 상황은 지피별로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1980년대와 2000년대 제1차, 제2차 지피의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34)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35) 이문항, 앞의 책, 207~208쪽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표 1】 군사정전위원회 (제113차~제119차), 정전협정 위반 관련 양측의 주장

제113차(1959. 12. 4)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감시소조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언론 통해 정전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태도</li> <li>• 외국군 철수, 13항 ㉔목 폐기철회, 신형무기 반입, 공중위반, 간첩북파, 공산포로 강제역류 등 선전</li> </ul>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 내 군사기지 불법구축을 비난, 정전협정 제1,6,9항 준수 촉구</li> </ul>
제114차(1960. 2. 11)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남한에 원자 및 유도무기를 불법 반입</li> </ul>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역량의 상대적 균형유지와 방위목적을 위해 정전협정 13항 ㉔목의 폐기가 불가피한 조치였음.</li> </ul>
제115차(1960. 3. 3)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형무기도입은 엄중한 정전협정위반, 불법 도입무기 반출하고 현재 운송중인 신형무기를 즉시 미국으로 반송할 것</li> </ul>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적 균형과 방위적 목적을 위해 자위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음.</li> </ul>
제116차(1960. 3. 15)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측의 마타토르 유도탄 발사와 정전협정 위반 비난</li> </ul>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파간첩의 40%가 마약 소지</li> </ul>
제117차(1960. 4. 19)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측이 도입한 신형 에네스트존 로켓트를 비롯한 신형무기의 발사계획을 즉시 중지할 것</li> </ul>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감시소조의 조사실태를 들어 간첩 남파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내 불법 군사기지를 해체할 것</li> </ul>
제118차(1960. 5. 4)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의 신형 에네스트존 발사, 북파간첩, 비무장지대에서 군사훈련과 미사일 및 자동화기 반입, 무장인원의 침입 행위 및 정찰행위 비난</li> </ul>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적인 비난과 부당한 요구 제기 중지</li> </ul>
제119차(1960. 5. 19)	
유엔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측이 비무장지대 내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인원을 배치시킨 데 대한 공동감시소조로 유엔측 요원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설물 접근을 거부한다고 비난</li> </ul>
공산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측 주장은 거짓. 공산측 민사행정경찰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크기가 큰 것일 뿐. 신형무기를 즉시 해외로 반출할 것</li> </ul>

출처: 국방정보본부, 앞의 책, 247~249쪽 재정리

【표 1】은 1959년말~1960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 진지구역과 신형무기 반입 등이 논란될 때 양측이 어떠한 논리로 대응했는지, 공동감시소조를 활용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엔군측이 공산측에 제기한 문제는 비무장지대 내 불법 군사진지였고, 그에 대해 공산측은 민사행정경찰 거주 건물이라 대응하며, 반대로 유엔군측이 신형무기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유엔군측은 군사적 균형과 방위적 목적을 위해 강구된 자위수단이라 정당화하며 정전협정 13항 ㉔목의 폐기를<sup>36)</sup>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은 정전협정을 이용하여 상대의 행위를 불법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불법행위는 정당화하면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갔다.

양측은 단순 월경 사건은 쉽게 조사했고 실수도 시인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안에 새로 구축한 요새진지, 무장간첩 침투사건 또는 쌍방의 총격/교전사건을 공동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도, 군사정전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sup>37)</sup> 공동감시소조의 조사활동은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조사하던 상대방의 공동감시소조 조사원들을 향해 발포까지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sup>38)</sup> 양측은 상대의 회의 소집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1967년 4월 8일 243차 본회의 이후 북한측의 불참으로 그 기능이 “마비상태”가 되었다.<sup>39)</sup> 정전 이후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더이상 비무장지대 위반사건 조사, 이를 통한 무장화

---

36) 정전협정 13항 ㉔목 규정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군사력 증강 감시기능에 대한 것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남북 양측의 군사력 증강 감시기능을 부여받았으나, 남북이 모두 그 기능을 무효화하고 철수를 요구하여 결국 1950년대 중후반 철수하였다. 그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태균, 2003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63 참고.

37) 이문항, 앞의 책, 207~208쪽

38) 이문항, 위의 책, 208쪽

39) 국방정보본부, 앞의 책, 157쪽

와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기구가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비무장지대에는 자동화기 반입, 진지구축,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탄약의 도입 등의 무장화가 진행되었고, 군사충돌은 점차 격화되었다.

## II. 1960년대 후반, 남북의 비무장지대 충돌과 유엔군사령부

### 1. 북한의 공세와 남한의 베트남파병에 대한 미국의 인식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비난과 설전이 오갔지만, 1966년 10월까지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반이나 비무장지대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위반이 의도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sup>40)</sup> 박정희는 방한한 존슨(Lyndon B. Johnson)과의 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고질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짜증 나는 요소(an irritating factor)이지만 심각한 위협(a serious danger)은 아니”라고 말했다.<sup>41)</sup> 1965년 봄부터 미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은 비무장지대의 상황 변화가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 위협보다는 남한의 베트남파병이 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1966년 말 이후, 비무장지대 충돌은 양적 질적으로 이전과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표 2】는 1965~1967년 7월 간의 비무장지대 사건의

40) “120. Report Prepared by the Office of National Estimate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ashington, June 23, 1967, *FRUS 1964-68 KOREA*

41) “96.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k” Seoul, November 1, 1966, *FRUS 1964-68 KOREA*

추이를 유엔군사령부가 파악한 것으로, 1965년과 1966년의 총돌횟수는 30~40건 정도로 비슷했지만, 1967년의 7개월 동안은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상자와 총격전 수가 급증했다.

【표 2】 유엔군사령부가 파악한 비무장지대 사건 추이

연도	DMZ 사고	총격전 (DMZ+국내)	북한, 사망자	북한, 총격전 후 생포자	남한·유엔 군, 사망자	남한·유엔 군, 부상자
1965	42	29	34	집계되지 않음	40	49
1966	37	30	43	집계되지 않음	39	34
1967. 7	286	132	146	35	175	175

출처: “123. Memorandum From Alfred Jenkin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Rostow)”, Washington, July 26, 1967, *FRUS 1964-68 KOREA*

1967년 중반이 되자 비무장지대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달라졌다. 미 정보부와 국무부는 북한의 위반 양상 변화를 주목했는데, 1966년 10월 이전에는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면, 이후에는 의도적인 폭력이나 괴롭힘(harassment)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에는 북한군이 주로 민간인 복장을 한 채 한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총격전을 하지 않았지만, 10월 중순부터 선제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군을 찾아와 공격하는 총격전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sup>42)</sup> 미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유엔군에 대한 산발적인 폭력과 정전 이후 처음으로 사보타주 임무를 시도하고 있고, 외판 시골의 게릴라 기지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소규모 팀들을 침투시키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sup>43)</sup>

42) “98. Intelligence Memorandum” Washington, November 8, 1966, *FRUS 1964-68 KOREA*.

43) “120. Report Prepared by the Office of National Estimate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ashington, June 23, 1967, *FRUS 1964-68 KOREA*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위반의 의도가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베트남전 추가 파병 방해에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군사적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것은 소련이나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침략이나 전쟁 발발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는 없으며<sup>44)</sup> 남한이 베트남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sup>45)</sup>

미국은 남한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을 추진하면서 추가 파병이 비무장지대에 미치는 영향과 남한의 여론 및 정치적 문제들을 우려했다. 실제로 비무장지대의 사건 수 증가가 남한의 베트남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했다.<sup>46)</sup> 주한미대사와 미국무부는 비무장지대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에 추가 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sup>47)</sup> 북한의 비무장지대 사보타주나 압박 등이 남한에서 방위력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으며,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았다.<sup>48)</sup> 비무장지대를 사이로 공산측과 대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가 베트남에 파병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sup>49)</sup> 바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활동 강화는 한국군의 추가 전투병력 투입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sup>50)</sup>

44) “130.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SNIE 14.2-67, Washington, September 21, 1967, *FRUS 1964-68 KOREA*.

45) “127.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September 15, 1967, *FRUS 1964-68 KOREA*.

46) 위와 같음.

47) “10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November 22, 1966, *FRUS 1964-68 KOREA*.

48) “128.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49) “10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November 22, 1966, *FRUS 1964-68 KOREA*.

1967년 부임한 포터(Porter) 주한미대사는 베트남전 추가 파병을 위해 미국이 박정희의 국내 정치적 장애물 극복을 도와야 한다고 미 국무부에 전했다. 정치적 장애물이란 한국의 여론이었다. 포터는 남한의 안보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군의 육상과 해상 경계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북한의 간첩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보안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비와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능력을 한국인에게 가시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되었다.<sup>51)</sup>

이와 같이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에 對침투(counter-infiltration) 장비를 지원하여 비무장지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전 파병과 안보 불안 여론을 이유로 비무장지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미국과 상통하는 면이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 2. 미국의 정전협정 ‘준수’와 유엔군사령부 존속

남한은 비무장지대 사건들에 대해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을 주장했다. 1967년 9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본스틸 유엔군사령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침투에 대한 방지 작전에 동의한다면서도 불만을

---

50) “123. Memorandum From Alfred Jenkin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Rostow),” Washington, July 26, 1967, *FRUS 1964-68 KOREA*.

51) “128.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표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할 때마다 보복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2)</sup>

한국정부는 보복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자체 침투부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켰으며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으로 진입하는 여러 시도를 했고, 이를 미국도 인지하고 있었다.<sup>53)</sup> 한국의 침투부대는 1967년 하반기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유엔군 사령부는 1967년 9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보복공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복행위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상기시켰다. 포터 주한 미 대사도 한국 국무총리에게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sup>54)</sup> 1968년 푸에블로 사건 직후 방한한 사이러스 밴스(Cyrus R. Vance) 특사가 1967년 11월 한국군이 북한 인민군 사단 사령부에 대한 습격을 감행했고, 이는 다시 북한의 보복공격을 가져오는 등 비무장지대 군사충돌에서 북한의 침투 못지않게 남한의 도발적 성격이 있음을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sup>55)</sup>

주한미대사관과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에 의한 비무장지대 긴장 고조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만을 드러냈다. 비무장지대에서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막고, 가능하다면 확대하지 않으며,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56)</sup> 주한미대사도 국무총리에게 유엔에

52) “12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특히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한국의 보복 주장과 미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홍석률, 2001, 앞의 논문, 196~199쪽 참조.

53) “181. Memorandum From Cyrus R. Vance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February 20, 1968, *FRUS 1964-68 KOREA*

54) “12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55) “181. Memorandum From Cyrus R. Vance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February 20, 1968, *FRUS 1964-68 KOREA*

56) “99. Telegram From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Eighth Army, Korea, and

서의 한국의 지위 약화, 북한의 선전에 활용될 소지,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의 권위 약화, 미 의회의 對韓 군사 원조 지원 약화 등을 강조했다.<sup>57)</sup> 이러한 미국의 원칙은 1968년 1월 전쟁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 직후에도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반대했다.<sup>58)</sup> 밴스는 남한의 북한 침투가 도발적 성격을 가지며, 징벌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박정희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즉각적, 징벌적, 보복적 조치”를 포함한 한미간의 보복을 약속하기를 거부했다.<sup>59)</sup>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침투가 정전협정 위반인 것처럼, 한국군의 북한공격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위반은 곧 정전협정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남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한 이유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유엔군사령부 존속을 위한 측면도 컸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에서 불법행위를 벌이면, 그것은 곧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60)</sup> 윈스롭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미대사는 “미국이 범법자의 역할에 캐스팅될 것”을 우려했다.<sup>61)</sup> 본스틸도 자신의 임무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집행하는 것이며, 유엔군사령부가 휴전협정 위반의 당사자

---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Korea (Bonesteel) to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Wheeler)” Seoul, November 10, 1966, *FRUS 1964-68 KOREA*

57) “12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58) 홍석률, 2001, 앞의 논문, 196~199쪽

59) “181. Memorandum From Cyrus R. Vance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February 20, 1968, *FRUS 1964-68 KOREA*

60) “10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November 29, 1966, *FRUS 1964-68 KOREA*

61) 위와 같음.

라면 한국에서 유엔사령부를 보존하고 계속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sup>62)</sup>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및 존재를 거듭 강조했다.

더구나 유엔 내 유엔군사령부의 본질적인 위상의 문제가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가 갖고는 있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비유엔국가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진 것에 대해 유엔이 승인한 바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브라운은 한국전쟁 때 유엔결의안이 ‘통합사령부’만을 요구했고 ‘유엔사령부’라는 문구는 어떤 유엔결의안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합사령부’ 이름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채택했음에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유엔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sup>63)</sup> 아울러 브라운은 세계 각지의 유엔 평화유지군 시대에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의 관계가 이례적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때문에 정전 이후 13년 동안 적대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유엔 평화유지군과 같은 형식을 따르거나 유엔사가 유엔 망토를 벗어야 한다고 소련이 주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sup>64)</sup>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유엔군사령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그 근거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했다. 미국도 잘 알고 있듯이, 유엔군사령부의 본질적인 위상 문제가 있었고, 이를 소련이 제기할 때, 북한이 비무장지대 위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한다면, 유엔총회 여론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의 침투가 북한의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군을 억제하

62) “12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63) “10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November 29, 1966, *FRUS 1964-68 KOREA*

64) 위와 같음.

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sup>65)</sup> 즉 남한의 비무장지대 위반 문제는 곧 유엔사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었으며, 북한과 소련 등이 주한 유엔사의 법적 근거 문제를 따지면서 유엔사의 형태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남한의 북한 침투 문제를 정전협정 준수 그 자체보다도 유엔사 존속과 유엔 내 미국의 위상 측면에서 더 신경 썼다. 미국은 외연적으로는 남한의 비무장지대 위반을 제어하면서 정전협정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이면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존속 문제를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준수 강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배경과 인식하에 미국의 비무장지대 군사충돌에 대한 대응과 정책은 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상세 보고서의 유엔 제출,<sup>66)</sup> 둘째, 한국군의 도발 억제와 적정 수준의 현대화, 셋째, 대침투 체계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남한의 역습 능력 향상을 우려하려 한국정부의 군사 지원 대폭 확대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1968년 1월 이후에도 밴스는 미국의 1억 달러 추가 지원도 한국군의 대반란 및 대침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비무장지대 장벽 개선을 언급했다.<sup>67)</sup> 미국의 군사 지원의 내용과 목표는 대침투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65) 본스틸은 북한의 활동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196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거부하게 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희망 때문이므로, 유엔군사령부가 휴전협정 위반의 당사자라면 한국에서 유엔사령부를 보존하고 계속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2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67, *FRUS 1964-68 KOREA*.

66) 미국은 북한과 소련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위반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했다. “125.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August 23, 1967, *FRUS 1964-68 KOREA*; <주한유엔군사의 보고서> 《동아일보》 1967. 11. 3.

67) “181. Memorandum From Cyrus R. Vance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February 20, 1968, *FRUS 1964-68 KOREA*

### III. 비무장지대의 對침투 체계 구축과 무장화

#### 1. 한·미의 비무장지대 대침투 체계 구축 논의

대침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한국과 미국의 인식이 일치하는 최소의 공통분모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남한의 베트남과병과 관련해 예견되는 사항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 침투에 따른 남한의 안보 불안 여론을 우려했고, 남한의 베트남과병을 위해 反침투(anti-infiltration)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68)</sup> 미국은 베트남전쟁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한국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1966년 한국군 여단과 사단 병력 파견이 진행되기를 원했다.

한편, 1963년부터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을 요구했던<sup>69)</sup> 한국정부는 베트남전 추가 파병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보 불안을 이유로 이를 다시 제기했다. 베트남과병으로 생긴 병력 차질 보충과 향후 증파에 대비해서 정부는 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5개년을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데 대해 미국과 합의했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베트남과병 당시 미국이 약속한 3개 예비사단의 전투장비화가 1966년 내에 완료될 것이며, 야전군의 전반적인 개선도 1967년부터 본격화하여 1968년 말까지 장비 현대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sup>70)</sup>

68) “76.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Washington, January 27, 1966, *FRUS 1964-1966 KOREA*

69) 1963년 12월 국방부에서 한미 군사고위회담. 김성은 국방장관, 김종오 참모의장 등이 참석한 한미 군사 고위회담이 열렸고, 이때도 한국군의 현대화가 논의되었다. <國軍의 現代化時急 駐韓美軍減縮不可> 《동아일보》 1963. 12. 19.

70) <國軍裝備現代化 3年以內로 短縮> 《동아일보》 1966. 1. 31. 한국정부는 한미공동방위, 국군병력 60만 명 이상 유지 등도 미국에 요구했다[<공동방위·경제협조 논의> 《동아일보》 1966. 2. 9; <현국군 규모를 60만 이상으로> 《경향신문》 1966.

결국 1966년 3월 4일 한국정부는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일명 ‘브라운각서’를 받았다. ‘브라운각서’는 군사지원과 경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sup>71)</sup> 그중에 한국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대침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합동 연구와 수반 조치 등이 있었다.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전술을 파악하고 비무장지대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1966년 10월 26일과 28일, 본스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해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효과 개선 및 인접 운용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대침투체계를 설계했다. 이때 주한미군은 군수품, 전술과 기술, 훈련, 베트남과 한국 상황 등을 토대로 대침투 체계를 제안했고, 이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되었다. 이때는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비무장지대 위반사건을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때였다. 즉 남한의 베트남 추가 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침투 대응 조치들이 추진된 것이다.

대침투 체계 설계 작업은 1967년에도 계속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와 해안가 일대의 대침투 방어를 강화했다.<sup>72)</sup> 1967년 1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도 훈령 제18호 <간첩봉쇄 지침>을 하달했는데, 특히 비무장지대의 방벽 구축, 경계시설 강화, 감시초소, 관측초소의 방어력 강화를 지시했다.<sup>73)</sup> 이어서 김정은 국방장관은 휴전선의 진지 강화와 방책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sup>74)</sup> 이렇게 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침투 체계 구

---

### 3. 1].

71) 한국군 현대화 장비 지원, 추가 베트남파병 비용의 미국 정부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 군사 원조 이관 중지, 대한 차관 제공, 한국의 대베트남 물자·용역 조달, 병사 처우 개선 등이 그 내용이다. <한미정부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브라운 각서)>(1966. 3. 4), 한국국방연구원, 앞의 책

72) “138. Memorandum From the Director of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Foster) to Secretary of Defense McNamara”, Washington, December 7, 1967, *FRUS 1964-1966 KOREA*

73) 이창호, 1967 <간첩침투 봉쇄를 위한 전략촌 설립> 국방대학원

축은 비무장지대 무장화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브라운 각서의 이행을 촉구했지만,<sup>75)</sup> 미국의 한국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예로, 미국은 1,000만 달러~1,500만 달러 상당의 반간첩 장비(레이다, 적외선 조준경, 고속도 소총 등)를 1966년 말부터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정부는 ‘느린 전달(*slow delivery*)’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장비의 신속한 전달을 재촉했고, 미국은 해명하는 입장에 있었다.<sup>76)</sup>

미국은 한국보다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했다. 본스틸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응하여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도, 대침투 장비 품목들을 둘러싸고 한국이 베트남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우선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안 침투 대비 고속정이 도입될 것이라 말하면서도, 장비 생산 및 가용성을 고려하고, 베트남 내 유사한 품목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체품목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sup>77)</sup> 비무장지대 상황 악화에 따라 본스틸은 추가 방어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미 합참에 제출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설계였다.<sup>78)</sup> 본스틸이 말했듯이, 베트남과 한국은 미국의 대침투 장비들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상

74) <대간첩장비 등 강화> 《경향신문》 1968. 1. 16

75) “133.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3, 1967, *FRUS 1964-1966 KOREA*

76) <새해 軍援도 증가> 《동아일보》 1966. 7. 21;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Defense: COMUSK and MND discussion of anti-infiltration measures and ROKF modernization” 1967. 8. 17, RG 59, POL 23-7 Kor S 6/1/67

77)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Defense: COMUSK and MND discussion of anti-infiltration measures and ROKF modernization” 1967. 8. 17, RG 59, POL 23-7 Kor S 6/1/67

78) “138. Memorandum From the Director of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Foster) to Secretary of Defense McNamara”, Washington, December 7, 1967, *FRUS 1964-1966 KOREA*

황에 있었고, 이때 미국은 베트남에 우선 공급했다.

대침투 장비 지원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1968년 1·21 사태와 1·23 푸에블로호사건 이후이다. 사건 직후, 방한한 밴스 특사는 한국정부와 면담한 뒤, 미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침투에 대한 남한의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가 존재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반침투 시스템 강화를 촉진해야 하며, 본스틸 장군에게 미국의 유능한 군인과 기술을 침투 방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sup>79)</sup> 주한미대사관과 유엔군사령부 등은 대침투 장비와 한국군 현대화 조치들을 논의하고 특히 대침투 장비들의 한국 공수를 서둘렀으며 장비를 확대했다.<sup>80)</sup>

미국은 한·미가 애초 합의했던 대침투 장비의 지원을 베트남으로의 공수와 같은 우선순위에 두었다. 본스틸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개발했던 ‘대침투 패키지’(대침투작전용장비)에 포함된 우선순위 항목을 한국으로 공수할 것을 요청했고, 포터 대사는 이 권고를 승인했으며,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베트남으로의 수송과 같은 우선순위로 이 항공 운송을 승인했다. 구축함 2척과 곡사포 대대의 인도도 예정되었다. 한국내 연합군의 군사태세 강화를 위한 행동도 검토되었는데, 비무장지대 장벽 강화와 장벽의 해안 확장도 확인되었고, 장벽의 범위, 밀도, 정교함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sup>81)</sup> 국방부와 미 국

---

79) “181. Memorandum From Cyrus R. Vance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February 20, 1968, *FRUS 1964-68 KOREA*.

80) 미국은 대침투 장비의 지원을 대베트남 공수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는 그에 상응할 만큼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명틴위원회 청문록에서도 한국군의 장비가 주월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장비와 동일하지 않음이 논의되었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앞의 책, 166~168쪽

81) 이 외에도 도로, 철도 및 기타 통신 라인을 개선하고 한국의 군수품 및 자재 창고 개선, 항공기 제공 등이 검토되었다. “154. Memorandum From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Katzenbach)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February 5, 1968, *FRUS*

방부, 주한미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 방책을 지형에 따라 2, 3중의 복선으로 만들기로 했다.<sup>82)</sup>

주한미군은 1968년 2월 12일 ‘대간첩침투 및 대게릴라전 장비계획’에 따라 한국군에 조명지뢰 야간탐지 장치 장비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방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밖에도 한국군 유도탄기지, 공군기지 및 중요 방위 부대의 보안강화를 위해 목재, 방책재료 전구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up>83)</sup>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특수전 자탐지장치가 설치되었고, 한국군 담당지역에는 공군기지·미사일기지 등 중요 방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과 ‘트랩 플레어’ 등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한국군 담당 휴전선 일대에 설치할 탐지장치와 휴전선 감시장병들의 개인장비·야간 탐지 장비 등의 도입이 추진되었다.<sup>84)</sup> 이러한 배경에서 1967년 상반기까지 저조했던 대간첩장비 도입은 점차 증가했다.<sup>85)</sup>

---

1964-68 KOREA.

- 82) 방책의 복선화 외에도 그동안 경기도경찰국이 맡았던 서울에서 북부 경기도 일대의 방어를 군이 직접 맡는 방안도 결정되었다. <휴전선방어계획수정> 《동아일보》 1968. 1. 29
- 83) <對間諜장비導入> 《경향신문》 1968. 2. 13.
- 84) <전자탐지장치 설치. 미군, 서부전선일대에> 《동아일보》 1968 5. 24
- 85) 베트남전쟁과 ‘브라운각서’가 기반이 되어 대침투장비 지원이 1967년 하반기에 82% 수준이었고, 1968년 95%, 1969년 92%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있지만(오홍국, 앞의 논문, 119~121쪽), 한국정부는 ‘브라운 각서’의 이행결과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장비 현대화와 대간첩 장비의 충당에 대해서도, 1966, 1967 회계연도의 정상 군사원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브라운각서’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명턴 청문회] 《연합뉴스》 2005. 8. 26. <https://news.v.daum.net/v/20050826102813703?f=o>.

## 2. 철책 설치와 초목 통제

### 1) 철책 설치

1960년대 후반의 비무장지대 무장화의 가장 큰 변화는 철책의 설치였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방한계선에 철조망이나 목책이 설치되어 있었다. 1967년 8월 19일에 작성된 미군 문서에 “그곳(군사분계선: 인용자)에서 2천 미터 떨어진 곳에 남북으로 평행하게 나란히 철조망이 쳐있다”라고 묘사되었듯이,<sup>86)</sup> 이미 철조망은 비무장지대의 일부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철조망 울타리를 세웠다는 1966년 3월의 기사나,<sup>87)</sup> 1967년 6월 철원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이 끊어졌다는 기사도 등장했다.<sup>88)</sup> 끊기거나 제거능을 하지 못하던 목책선이나 철조망을 포함하여 비무장지대에서는 1967년 중반부터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진행되었다.

철조망 교체작업은 1965년 8월 미 1군단 사령관이 제2사단에 장벽의 필요성을 언급, 지시한 데서 시작했다. 이때 지뢰, 트립 플레어(trip flares)와 부비트랩(booby traps)으로 강화된 100m 폭의 이중 철조망 등이 구상되었다. 그 후 미8군은 제2사단에 체인 링크, 엮은 묘목, 가시철사(chain link, woven saplings, barbed wire) 등으로 구성된 시험장벽 울타리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1967년 5월 이 새로운 울타리의 비무장지대 적용이 고려되었으며 최적의 보안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다.<sup>89)</sup>

새로운 철책의 설치가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9월이다.

---

86)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87) <休戰線 危險指數 微騰> 《동아일보》 1966. 3. 3.

88) <무장괴한 5명 사살> 《동아일보》 1967. 6. 10

89)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1967년 9월 주한미군 대변인은 대공방책이 얼마 전부터 서부전선의 미 제2사단 지역에 구축되어왔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sup>90)</sup> 김성은 국방장관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동 협정을 휴지화했다고 선언”하면서, 서부전선과 같이 ‘간첩침투봉쇄’를 위한 방책 구축을 검토 중이며 같은 방책을 세우기 위한 교섭이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sup>91)</sup> 한국정부가 철책 설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이때다. 1967년 9월 1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대침투대책에 대한 기본지침이 논의되었고, 이어 오후에 열린 3군 지휘관 회의에서 세부실천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했다. 이때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이 바로 비무장지대에 가설되어있던 목책 등을 철책으로 대체보완한다는 것이었다.<sup>92)</sup>

철책선 구축은 1967년 8월 미 제2사단 구역의 설치를 시작으로 남방한계선 전역으로 확장되었다.<sup>93)</sup> 철책 공사는 1·21사태 이후 “피치를 올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sup>94)</sup> 중부전선에서는 1968년 1월 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sup>95)</sup> 특히 지세가 험한 동부전선의 가설은 6월에도 진행되고 있었다.<sup>96)</sup> 이로써 휴전선 방어는 거점 방어에서 선 방어로 개념이 바뀌었다.<sup>97)</sup>

90) <休線에 防柵구축 越17度線 것과 비슷> 《동아일보》 1967. 9. 16

91) 위와 같음.

92) <휴전선에 철책 가설-군지휘관 회의 간첩분쇄책 결정> 《동아일보》 1967. 9. 15

93) 육군보안사령부, 1978 《대공삼십년사》, 317쪽

94) <철통防備> 《동아일보》 1968. 6. 25

95) 중부전선의 철책가설공사에 동원된 병사들은 120kg이나 되는 철책기둥을 고지까지 옮겨 공사를 했고, 1968년 1월 말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1.21北傀侵入 후의 前線(상)> 《경향신문》 1968. 1. 29

96) <철통防備> 《동아일보》 1968.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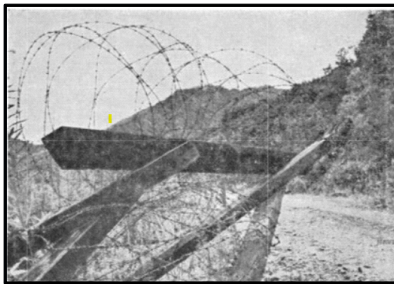
97) 위와 같음.

서부전선을 지키는 미 제2보병사단이 지난 8월 이후 임진강 북쪽 비무장지대(DMZ)남방에 세운 방책이 23일 하오 국내외 기자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DMZ 안전장치’의 일부로 마련된 이 방책은 전장 24km로 DMZ남방 한계선을 따라 뻗쳐있다. 방책의 높이는 10피트 정도인데 쇠고리철망, 쇠기둥 및 둥근 철조망으로 이뤄져있다. 방책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철문이 마련되어 있다. 미군은 철망올타리모양의 이 방책 말고도 대인 레이다, 적외선탐지기, 고성능망원경을 동원, 북괴군 침투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헤니온’ 대령은 이 방책에다 고성능 전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 방책은 DMZ를 넘어오는 북괴 무장 침투자들의 공세가 극심해지자 이에 대비, 기존 방위장치였던 낮은 둥근 철조망을 제거하고 미8군의 시험 계획으로 이룩되었다. 방책 주변에 있는 일체의 잡목림은 제거됐다. 방책의 효능에 대해 미군은 지난 8월 28일 판문점지원사령부가 피습당한 이후 뚜렷한 침공사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방책은 DMZ방위를 위한 커다란 개선’이라고 보고 있다.”<sup>98)</sup>(강조는 저자)

【그림 1】 1963년 7월 현재 철조망

【그림 2】 1967년 12월 현재 철책



출처: <중부전선 OO지구의 비무장지대 남부 한계선을 가리키는 철조망> 《동아일보》 1963. 7. 26

출처: <서부전선에 防柵 全長24킬로미터, 북괴침투대비> 《경향신문》 1967. 12. 25

98) <서부전선에 防柵 全長24킬로미터, 북괴침투대비> 《경향신문》 1967. 12. 25

1967년 12월 23일 국내의 기자들에게 처음 공개된 서부전선의 방책, 즉 남방한계선 전역으로 확장 설치될 철책의 모습을 보자. 1967년 중반 이후 세워진 철조망은 그 형태나 성능 면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이전에는 낮은 둥근 철조망 형태였지만, 쇠고리 철망 및 Y자형 쇠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그 사이를 가시철망으로 메웠다. 철책기둥의 무게는 120kg이었다.<sup>99)</sup> 그 결과 약 2.5~3m 높이의 쇠기둥 및 둥근 철조망, 가시철망 등으로 이뤄진 방책으로서의 형태와 기능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침투 저지용 지뢰지대가 설치되었다.<sup>100)</sup> 그리고 당시 미군 헤니온 대령은 고성능 전기장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250v의 전류가 통할 전기철조망도 철책과 나란히 가설되어 물샷틈 없는 방위망이 쳐졌다.”<sup>101)</sup>

그런데 이러한 철조망 구축 작업은 베트남과병 당시 미국의 대간첩 장비 제공 약속의 일환이었고, 당시 베트남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되었다.<sup>102)</sup> 주한미군은 베트남의 17도선에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대공방책을 한국 비무장지대 일대에 세우고자 했다. 더구나 러스크는 베트남에 추가 파병하는 한국군을 남베트남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장벽 설치에 투입할 것을 고려했다. 미군과 베트남정부가 이 사업에 투입될 것이지만, 한국의 침투방지 훈련과 경험은 이러한 임무에 특히 유용할 수 있으며, 이곳이 한국군의 추가 고용이 가능한 지역 중 하나라고 보았다.<sup>103)</sup> 한국 비무장지대의 대공방책은 베트남의 것과 비슷한

99) <1.21北傀侵入 후의 前線(상)> 《경향신문》 1968. 1. 29

100)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앞의 책, 148쪽

101) <철통防備> 《동아일보》 1968. 6. 25

102) <休線에 防柵子축 越17度線 것과 비슷> 《동아일보》 1967. 9. 16; “Telegram 1371 from Seoul to SecState WASHDC: Internal security: Reaction to train derailment” 1967. 9. 15, RG 59, Central Files POL 23-7 KOR S 6/1/67

103) “107. Memorandum From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mith)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Rostow)”, Washington, January 19, 1967,

것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인은 베트남 장벽 구축에 동원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의 비무장지대 대공방책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 결과로써 만들어졌다.

미국은 1965년부터 남베트남 비무장지대 남쪽에 장벽 설치를 고려했고, 1966년 10월경에는 착공 및 완공 계획을 구체화했다. 미국무부는 1967년 5월 하순을 목표로 2월 중순에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무장관 딘 러스크(Dean Rusk)는 “이것은 매우 기밀이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표현했지만,<sup>104)</sup> 1967년부터는 미국 내에서도 베트남 비무장지대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고,<sup>105)</sup> 1967년 9월 7일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은 철조망과 전자탐지장치로 된 대침투 방책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즉 1965년 지상 장애물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미군은 이미 남베트남 비무장지대 남쪽 폭 24km의 밀림 제거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고, 1967년 말부터 베트남을 동서로 가르는 64km 일대 방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 방책에는 야간투시적외선 장치를 포함하여 두세 명의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 탐지 장치가 포함되었다.<sup>106)</sup>

다시 말하면, 한국 비무장지대의 방책 구축은 미국의 남베트남 방책 구축 구상으로부터 나왔다. 1965년 미국은 남베트남 비무장지대의 철조망 방책 구축 가능성을 검토했고, 이와 거의 동시에 한국 비무장지대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했다. 그리고 베트남 방책 계획과 유사한 방책을 한국 비무장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 1967년 중반 이후 베트남과 한국의

---

*FRUS 1964-68 KOREA.*

104) “100.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Washington, November 19, 1966, *FRUS 1964-68 KOREA.*

105)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의원은 베트남 비무장지대에 방위장벽 구축을 제의했다. <DMZ에 방위장벽> 《동아일보》 1967. 8. 8

106) <월맹군 침투 막게 휴전선에 방책> 《경향신문》 1967. 9. 8

비무장지대에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철책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 방책에는 고도의 특수장치가 포함되었다.

## 2) 초목 통제

철책 구축과 함께 대침투 체계의 하나로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본스틸은 울창한 초목과 자연보호구역으로 덮인 비무장지대가 북한 측에 즉각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게릴라식 뺑소니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미 합참에 보고했다.<sup>107)</sup> 그래서 벌목작업이 수시로 진행되었다.<sup>108)</sup> 1966년에도 미 제2보병사단의 협조 아래 미 작업부대와 한국 민간인들이 벌목작업에 착수했다. 남방한계선을 연하여 폭 100m의 지대를 “까까머리”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임진강 북쪽 미군 병사 주위의 100~230m를 벌목하여 70% 완료되었다.<sup>109)</sup> 그런데 주한미군은 이 벌목작업과 더불어 초목 통제, 즉 고엽제(defoliants) 계획을 시행했다.

1963년 미 1군단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 제초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한국 상황, 미 육군생물학전연연구소 등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한국 비무장지대에 대한 고엽제 살포 계획이 수립되었다.<sup>110)</sup> 본스틸은 비무장지대에서 중대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목 통제 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스틸은 1966년 겨울에

107) “99. Telegram From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Eighth Army, Korea, and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Korea (Bonesteel) to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Wheeler)” Seoul, November 10, 1966, *FRUS 1964-68 KOREA*.

108) 1976년 8월 판문점 사건도 시야를 가리던 미루나무를 벌목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판문점 사건의 상세한 전개와 이 사건이 분단에 미친 영향은 홍석률, 앞의 책, 380~384쪽 참조.

109) <休戰線一帶를 伐木 間諜跳梁 막기 위해> 《동아일보》 1966. 1. 22

110) 이시우, <68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통일뉴스》 2011. 7. 27

준비된 비무장지대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결과 중 하나인 초목 통제 개념과 제안을 한국군이 ‘열렬히 지지’했다고 보고하면서, 한국정부와 대중이 초목 통제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했다.<sup>111)</sup> 주한미군이 자재와 지침을 제공하고 한국 부대가 자체적으로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한국 국방부에 제안했다.<sup>112)</sup>

미국 문서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초목 통제 계획이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1966년 이전부터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고엽제를 제공했고, 한국군은 살포한 바 있었다. 한국 국방부와 군이 1966년에 비무장지대 살포용 고엽제를 주한미군에 요청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1963년 말에도 한국 6군단 화학장교가 감시초소 등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sup>113)</sup> 한국1군사령부와 미1군단사령부는 비무장지대 남쪽 띠(남방한계선)와 민통선 사이 민북지역에 대한 초목 제거 계획을 제출했고, 이는 1967년 3월 31일 미8군에 의해 승인되었다. 미국무부와 국방부는 이 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 알렸다.<sup>114)</sup> 한국정부가 초목 제거 계획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1967년 9월이다.

1967년 9월 20일 한국정부는 초목 통제 계획을 허가했고, 이후 미국무부의 인가로 미8군사령부가 한국1군단과 미1군단에 평지(미2사단)와 산악지역(한국21사단)에서 제초제의 유용성을 실험하기 위한 실행훈련을 명령했다.<sup>115)</sup> 1968년 1월 국방장관은 비무장지대의 고엽제화와 펜스(fence) 건설 등을 대침투 대책의 하나로 언론에 발표했고,<sup>116)</sup> 미1군단은

---

111)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DMZ defenses: Vegetation control” 1967. 9. 2, RG 59, POL 23-7 KOR S 6/1/67

112)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DMZ defenses: Vegetation control” 1967. 9. 13, RG 59, POL 23-7 KOR S 6/1/67

113) 이시우, <68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통일뉴스》 2011. 7. 27

114) 이시우, <주한미군의 고엽작전 실험프로그램과 그 실태 문서들> 《통일뉴스》 2011. 7. 25

115) 이시우, <68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통일뉴스》 2011. 7. 27

포괄적인 초목통제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경보를 1968년 1월 발령했다.<sup>117)</sup> 이에 따라 고엽제는 1967년 10~12월 일부 지역에서 실험되었으며, 1968년 4월 15일~5월 30일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따라 사용했으며, 1968년 4~8월 블루와 오렌지제가 살포되었고, 1969년 5월 19일~7월 31일 남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재분배된 제초제가 살포되었다.<sup>118)</sup>

철책 주변에는 고엽제가 살포되었고, 또 철책과 요새화된 벙커 둘레에는 베트남전에서도 사용되었던 클레이모어 지뢰가 묻혔다.<sup>119)</sup> ‘빈틈없는 방위태세’로<sup>120)</sup> 묘사된 비무장지대는 바로 철책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제초, 지뢰, 지뢰 등으로 구성된 무장화를 의미했다.

... 이젠 콘크리트로 영구요새화된 우리 진지엔 적의 침투를 조기에 발견, 분쇄할 수 있는 갖가지 신형장비가 갖춰져 병사들의 용기는 더한층 치솟고 있다...

“이젠 북괴병이 귀순해오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3대대 10중대 화기소대장 최동원 소위(25)는 우리의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때때로 어둠을 틈타 철책선까지 기어드는 북괴공비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동부휴전선에 늘어선 우리의 전방초소는 이제 철책선을 뒤로하고 한발자국 북쪽으로 다가섰고 새 초소 앞엔 새 방책과 각종 장애물이 깔들어섰다. 새 방책선 앞의 산들은 모두 나무를 잘라 육안으로 저들의 접근을 볼 수 있게 하고 밤엔 특수한 청음장치로 발자국 소리를 알아내는가 하면 ‘스타 라이트 스코프’ 등으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다. 콘크리트로 요

116) “143. Editorial Note” *FRUS 1964-68 KOREA*.

117) 이시우, <68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통일뉴스》 2011. 7. 27

118) 《동아일보》 2011. 5. 20; 강평원, 2002 《북괴공작원》, 선영사, 121~125쪽(이상 조성훈, 앞의 책, 142쪽 재인용); 이시우, <이미 설치한 철조망에 왜 오렌지제를 살포했을까?> 《통일뉴스》, 2011. 7. 26

119) <철통防備> 《동아일보》 1968. 6. 25

120) 위와 같음.

새화된 각 진지엔 오는 4월말까지 지탱할 수 있는 주부식 등 모든 보급품이 확보되어 있고 종래 거점 방어 형식으로 고지에 고립되었던 GP는 새로운 작전개념에 따라 線으로 연결, 유사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각급 지휘관과 병사들은 아무 불안감 없이 경계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2102부대장 최일영 소장의 말이다.”<sup>121)</sup>(강조는 저자)

위의 자료는 1971년 1월 1일 양구와 인제 사이의 비무장지대 모습이 다. 이곳은 해안 분지를 뒤로 하고 북쪽에 ‘김일성고지’와 ‘스탈린고지’, ‘단장의 능선’과 마주한 남측 비무장지대로, 대우산 1111고지의 전방지휘소와 가칠봉 지피이다. 이 기사는 남측 진지들이 콘크리트로 영구요새화되고 신형장비들을 갖추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전방초소들이 북쪽으로 더 전진 배치되었다는<sup>122)</sup> 사실과 더불어 그 앞에 새 방책과 각종 장애물이 설치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방책선 주변에는 감시를 위한 각종 특수장치가 설치되고 모든 나무가 제거되었으며, 개별적으로 고립되었던 전방초소 지피가 선으로 연결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마치 오늘날 비무장지대의 경계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는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1971년 1월 이전에 이미 그 전형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966~

---

121) <1,111고지> 《동아일보》 1971. 1. 1

122) 정전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에 전진 배치가 진행된 남북의 지피는 현재 그 거리가 매우 가깝다. 2018년 겨울 시범 철수된 남북 지피들의 상호 거리가 1km 이내에 위치했고, 고성829지피는 북한군 지피와의 거리가 580m에 불과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간의 물리적 거리는 매우 가까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38선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한국정부의 공식 진사인 국방부의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1967)은 “상호의 대치거리 100~300미터를 격하고 있는 곳에서는 쌍방 간에 선전전이 시작되고 다음에는 육설이 오고 가고 마지막에는 사격전으로 번지고 마는 실태가 38선상의 전역에서 일과처럼 되풀이되었다.”라고 38선 충돌을 묘사했다. 38선 충돌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의 상황은 전쟁 발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새화된 감시초소는 방어와 공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항시적인 경계와 군사충돌을 가져왔다.

68년 비무장지대의 대침투 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 맺음말

이 글은 정전 이후 1960년대까지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의 규정과 취지를 위반하고 그 이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무장화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과정은 정전 직후부터 전개된 군사정전위원회 산하 공동감시소조 기능의 무력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진지구축이나 무기류의 반입 등 비무장지대 위반을 조사하고 해결할 공동감시소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채로 비무장지대는 군사화되고 충돌의 장이 되어갔다. 1960년대 전반 감시소소의 요새화가 진행되었고, 1966년 대침투 체계 계획 수립 이후 1967~68년 철책 구축과 초목 통제를 중심으로 비무장지대 무장화가 일차 완료되었다.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배경과 내용 면에서 베트남전의 영향이 컸다. 무장화의 핵심 배경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위반 또는 1·21사태와 같은 북한의 침투보다는 남한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에 대한 안보 불안 등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이 있었다. 대침투 체계 구축의 애초 목표는 미국이 남한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대침투 체계의 주요 내용이었던 철책 장벽 구축과 고엽제 사용 등도 한국 비무장지대 상황을 고려, 분석하여 진행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베트남전 상황과 직결되었다. 북한의 공세는 대침투 체계 구상과 계획을 시급한 요소로 인식하게 하고 확대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무장지대는 남북 관계와 세계 냉전의 상호 작용 과정의 결과로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비무장지대를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군사화했다. 미국은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의 북한공격을 억제하면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자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추구하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미국이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유엔 내에서 언제든지 그 존속 문제를 둘러싸고 공격받을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을 중시해서였다. 한국군의 비무장지대 위반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과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통해 한반도의 정전을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

유동적이고 불안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역학관계, 막강한 힘의 대치, 위기관리기구의 작동 등이 지적된다. 그런데 정전체제 작동의 핵심 공간으로서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위기관리기구는 이미 무력화되었고, 미국은 유엔사의 존속을 위해 한국군에 의한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한편 방책 강화 중심의 무장화를 추진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속과 대침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전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전체제의 극복은 비무장지대 위기관리기구의 재정비 및 작동, 나아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정치·군사적인 사건을 포함한 환경·문화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공동조사 및 대처 기구의 제도화, 유엔사 기능에 대한 재검토, 비무장지대의 비무장 확대 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경향신문』, 『동아일보』(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한겨레』(<http://www.hani.co.kr>)

『연합뉴스』(<http://yna.co.kr>)

국방부, 1967,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

국방정보본부, 198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1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명턴위원회 청문록』

육군보안사령부, 1978 『대공삼십년사』

한국국방연구원, 1991 『韓美安保關聯協定 要略集: 1948~1989. 9』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G3, Eighth U.S. Army APO 96301(EAGO-MH) 19 Aug 67, RG 550,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4, Entry A1 2, Box 100.

RG 59, 1967-69 SNF,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POL 23-7 KOR S 6/1/6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68*, volume XXIX, Kore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

### 2. 논저

이창호, 1967, 「간첩침투 분쇄를 위한 전략촌 설립」, 국방대학원

이문향, 2001, 『JSA-관문점(1953~1994)』, 소화

홍석률, 2001,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 관계」

『한국사연구』 113

홍석률, 2003, 「위기 속의 정전협정-푸에블로 사건과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역사비평』 63

홍석률, 2012,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박태균, 2003,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63

박태균, 2015, 『베트남전쟁』, 한겨레출판

김보영, 2003, 「1960년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체제」 『역사와 현실』 50

한모니까, 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50

최용호, 2004,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2011,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오홍국, 2011,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국방현대화 과정 분석」 『군사논단』 67호

정근식, 2018, 「분단·냉전 경관과 평화-군사분계선 표지판과 철책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100

## Abstract

#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Militarizing in the Korean DMZ in the 1960s

Hahn Monica

The Demilitarized Zone is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a key space where the armistice system works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a space condensed for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namely concentration of military force and military conflict. How did the zone become such a contradictory space where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regime are possible? In addition, the DMZ is not a stationary space of about 250 kilometers long and 4 kilometers wide, but one that has been changing since shortly after the blackout. What was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the zone, and how did it change?

The article examines the appearance of the DMZ surrounded by today's iron fences an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through the DMZ were created in the 1960s. The militarization of the DMZ in the 1960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n counter-infiltration system of iron fences, herbicides and mines, which was not done simply as a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but as a result of the Vietnam War. In other words, I want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e change in the DMZ in line with inter-Korean relations, Korea-U.S.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look for clues to the armistice system and its overcoming, which is

사학연구 제135호(2019. 9)

maintained around that space. Hopefully, by reflecting on the DMZ' armed history,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urn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Keywords : Armistice Agreement, Demilitarized Zone(DMZ),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Joint Observer Team(JOT), Korean Crisis in the 1960s, Vietnam War, United Nations Command, Iron fence, Vegetation Control, Guard Post(GP)